

보도시점 (온라인,지면) 2026. 3. 31.(화) 국무회의 종료 시

국정 운영에 기초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두텁게 반영한다

-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으로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2명 확대
- 시·군·구별로 상이한 정책 환경 반영 및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강화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여를 확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 당시 ‘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석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에 검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진행되었다.

<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요 >

- △ (기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방 정책 관련 최고 회의체
- △ (구성) 의장: 대통령, 부의장: 국무총리, 구성원: 시·도지사, 재경부·교육부·행안부·기획처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법제처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 △ (현황) 총 9차례 개최 ※ 이재명 정부에서는 최근 2025년 11월 12일에 개최

-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협력회의 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구성원이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총 2명을 확대하는 것이다.
- 그동안 협력회의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1명(구청장)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을 대표하여 참석하였으나, 시·군·구별 상이한 행정 환경을 국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앞으로 시, 군, 구별로 각 1명이 참석함에 따라 안건 심의 과정에 시·군·구 유형별 특성이 고루 고려될 수 있게 되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지방우대 원칙’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윤호중 장관은 “지방의 직접적인 건의가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앙과 지방간 소통·협력을 위한 최고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다양한 지방정부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적 논의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자치행정과	책임자	과 장	박성민 (044-205-3101)
		담당자	사무관	김동혁 (044-205-3121)



시행령 개정 전후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 변화

개정 전 (29명)	구분	개정 후 (31명)
대통령	의장 (1명)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장	부의장 (2명)	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장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지방시대위원장	중앙 (7명)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지방시대위원장
시·도지사(16명),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 (19명 →21명)	시·도지사(16명), 시·군·구청장협의회장 및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2인 ,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